



<국회의원 특권 시리즈 ⑤>

국회의원 특권 실상: '공직 선거' 분야(1)1)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이옥남)

공직선거 분야에서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으로는 우선 의원 신분으로 대통령 선거 캠프에 참여할 수 있고 급여 등 의원으로서의 혜택을 그대로 누린다. 국회의원이 아닌 정무직을 포함한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제60조에 의해 특정 후보 캠프 가담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미국의 경우 현역 의원이 대선 후보지지 선언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선 캠프에 참여하여 본부장이나 비서실장 등의 직책을 갖지 않는다.

또한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제53조에 의해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대통령 선거 등에 출마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에도 다른 공직자 후보자 보다 사퇴 시한 등에서 유리한 조건을 가진다. 공직선거법 53조 2항 및 3항에 의하면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후보자등록 신청일전(선거일 19일전)까지 사퇴하면 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역구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후보자등록신청일전까지 사퇴해야 한다(【표 1】 참조).

【표 1】 주요 공직 선거일정별 사퇴 시한

선거별	예비후보 등록	공직자의 사퇴 (의정보고 금지)	국회의원의 사퇴	후보 등록	선거 기간 개시	선거일
대통령	D-240일	D-90	의원은 사퇴 불필요	D-24 (이틀간)	D-22	D
국회의원	D-120일	" (단체장은 120일전 사퇴)	의원은 사퇴 불필요	D-20일 (이틀간)	D-13	"
광역단체장	D-120일	" (단체장/의원 사퇴불필요)	의원은 19일 전 사퇴	"	"	"
시장/의원	D-90일	" (")	" (지역의원에 출마시 90일 전 사퇴)	"	"	"
군수/의원	D-60일	" (")	" (")	"	"	"

※ 출처: 바른사회시민회의(2014. 2)

1) 본 시리즈는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014년 발표한 「국회의원 특권: 그 실상과 혁파방안」을 시리즈로 재구성하였음.

국회의원이 아닌 경우, 즉 잠재적 경쟁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의 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공직선거법 53조 5항에 의해 선거 120일전에 사퇴해야 한다. 공무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상근임원, 농협 등의 임원, 사립학교 교원, 일부 언론인이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공직선거법 53조에 의해 선거 90일전에 사퇴해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과 단체장은 공직선거법 86조 2항에 의해 지방의원과 단체장 선거에 사퇴하지 않고 출마할 수 있으나, 선거일전 60일부터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통장반장회의 등-는 금지된다.

국회의원은 공무원 신분인 보좌진(인턴 포함 9명)을 지역구 관리와 선거운동원(사무원)으로 동원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62조 5항에 의해 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는 선거사무원 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국회에서 차지하는 보좌진의 규모 및 인건비는 상당하다(【표 2】 참조).

【표 2】 국회 인건비중 보좌직원이 차지하는 비중(2013년)

(단위 : 명, 백만 원)

	의원실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사무처 직원	계	국회 도서관	국회예산 정책처	국회입법 조사처
	의원	보좌직원						
인원	300	2,093	67	1,339		300	125	117
예산	31,581	122,051	5,726	86,446	245,804	19,651	8,681	8,109
점유율(%)	12.8	49.7	2.3	35.2	100.0			

※자료 :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 외 일반 후보자는 선거사무원의 수가 제한된다. 공직선거법 62조 2항에 의해 읍·면·동 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 이내다. 또한 공무원은 선거 등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정치운동을 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65조, 지방공무원법 57, 공직선거법 9조, 86조 1항 등).

- 소속직원이나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 홍보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 및 실시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 및 발표
 - 선거기간 중 국가 또는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기공식
 -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
 -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의 방문

주요 의회선진국에서는 보좌진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선거는 자원봉사자가 하는 것이 원칙으로 지켜지고 있다. 미국 하원의 로라 리처드슨(Laura Richardson) 의원은 보좌진을 선거캠프에 일하게 종용했다는 이유로 2012년 2월 윤리위로부터 벌금 1만 달러(약 1,131만 원)를 부과 받았다.

※ 국회의원 특권 시리즈 ⑥ :국회의원 특권 실상: '공직 선거' 분야(2)